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관련 귀 기관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의 변화 등 방역상황을 반영하여 예방접종완료자의 **밀접접촉 및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관련 규정**을 변경한 「**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**」을 송부하오니,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개정 사항>

- **밀접접촉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**
 - 선행확진자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삭제
 - PCR 검사 횟수 확대(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1회 추가)
 - 고위험집단시설 관련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신설
(확진자 발생 고위험집단시설 입소자, 이용자, 종사자의 경우 격리 적용)
 - ※ 고위험집단시설 외 확진자의 경우 위험도 평가에 따라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가능
- **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**
 - 변이유행여부 외 해당국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격리면제 적용제외국가 설정 가능하도록 개념 조정 ('변이유행국가' → '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')
 - * 기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선정 대상 중 국내외 우세종인 델타 변이는 제외('21.10월부터)
 -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동반 6세미만 영유아 격리면제 적용('21.9.17일부 기 시행중)
 - *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4406(2021.9.17.) 국내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관련 조치 안내

※ 시행일: 9.24.(금) 시행

- * 개정 이전 지침에 따라 조치중인 자에 대해서는 개정지침 내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격리 실시 및 해제(수동감시 전환) 등 여부를 판단 및 시행할 수 있음

- 붙임 1.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(제3판) 전후비교표 1부.
2.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(제3판) 1부. 끝.

중앙방역대책본부장



수신자 모든 기관, 시도, 시군구, 학협회

역학조사관 **송영준** 보건연구관 **김정연** 팀장 **곽진** 상황총괄단장 **배경택** 전결 2021. 9. 19.
협조자 역학조사팀장 **박영준** 해외출입국관 **김주심** 리팀장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19514 (2021. 9. 19.) 접수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중 / <http://www.kdca.go.kr>
전화번호 043-719-9329 팩스번호 043-719-9149 / syjace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공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